

□ 기획연재 □

컴퓨터 과학 산책(14)

Gateway 서비스 제공자와 게시판 운영의 저작권상 법적 책임

인하공업전문대학 박근순*

저작권법은 일정한 기간 그 저작권의 소유자에게 그 작품에 대한 본배, 재 제작, 연주, 각색, 전시 등에 관한 절대적인 권한을 보호해 줌으로써 과학의 진보와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은 보호된 저작물의 승인 받지 않은 복제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소유권(IPR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세계적 보호의 기본 전제는 희귀성이며, 복제 금지와 같은 본배의 권한을 IPR소유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노동의 결실에 대한 대가를 마련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Computer network, 특히 INTERNET세계에서는 이러한 희귀성의 전제는 역전된다.

방대한 자료를, 그것도 원본과 똑같은 품질의 것을 거의 무료로 습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저작권 보호의 전통적 개념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창조자의 권리와 대중의 알 권리간의 조화를 위한 접근이 재검토되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INTERNET은 세계적 접속 대상이기 때문에 IPR소유자들은 network이 연결된 세계 어느 구석에서도 자신들의 IPR을 침해당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 더욱이 정보 고속도로가 확장되면 될수록 저작권 침해에의 노출도가 심해져서, 관례조차 없는 IPR의 절도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IPR의 침해에는 실제 침해자 뿐만 아니라 network이나 게시판에의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On-line service제공자와 computer게시판 운영자는 network을 악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잠재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다음은 On-line service 회사와 computer 게시판 운영회사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미국 법정 관례이다.

Case 1. 1991년, On-line service회사인 Compuserve는 비방 중상하는 기사를 전자신문에 게재한 혐의로 이른바 문서비방죄로 고소를 당했는데[Cubby v. Compuserve, 776 F. Supp. 135(S.D.N.Y. 1991)], Compuserve사는 별도의 한 회사와 포럼을 편집, 모니터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뉴욕의 빈범에는 중상 비방하는 내용을 선포하는 자는 법적책임이 있으나, 공공의 목적으로 접속을 위해 정보를 저장하거나 뉴스 제공자, 서점, 도서관 등은 중상비방의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있다.

따라서, 뉴욕 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Compuserve사는 출판사라기보다는 대중 도서관 신문 잡지 판매점과 같은 것으로서, 전송된 모든 정보내용을 모니터링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판정했다.

Case 2. 1993년, Playboy사는 George Frena사를 고발했는데, 이는 George Frena사가 그들의 구독자들에게 Playboy지와 Playgirl지의 판권이 있는 사진을 download하고 upload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다는 이유였다 ([Playboy Enterprises, Inc. v. Frena, 839 F. Supp. 1522 (M.D. Fla, 1993)]. 그 사진들이 들어 있는 파일에는 “Playboy”와 “Playmate”라는 상표명이 부착되어 있었는데도, Frena사는 자신이 직접 복사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사

*정회원

진을 이용한 것은 “공정한 사용 Fair use”에 해당한다는 것을 애써 주장했다. 법정은 Frena사가 Playboy사의 분배권과 전시권을 범함으로써 Playboy사의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였다고 판정했고, 그 용도는 상업적이며, 저작권 보호의 대상들이 침해를 받아 이미 상당량이 복사되었고, 복사가 계속된다면 영업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결했다.

Case 3. 1994년, Sega사는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비디오 게임 프로그램의 복사본을 구독자들이 교환하는 데 이용하도록 한 컴퓨터 게시판 서비스 회사 MAPHIA를 고소했다[Sega Enterprises Ltd. v. MAPHIA, 1994 U.S. Dist. LEXIS 5266(N.D. Cal. march 28, 1994)]. 피고측이 직접 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서비스 중에 Sega사의 game이 제공됨을 선전했고, 복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장치를 download되는 때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복제 행위에서 편의와 방법과 지식을 제공하고 장려하는 역할이 결과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조장한 것에 해당한다고 법정은 판결했다.

결국, 법정은 가압류를 실행하고, 피고의 컴퓨터와 기억장치를 몰수하여 침해 정보의 복제물을 지우도록 차압 명령을 내렸다.

Case 4. 1995년, 뉴욕 주 법정은 Prodigy사의 전자 게시판에 가입자에 의해 게시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밝혀 내고, 주식 사기행위를 한 중개업자를 고발함으로써 다른 On-line 서비스 회사들과 Prodigy사를 구별해 냈다[Stratton Pakmont, Inc. v. Prodigy Servs. Co., 1995 N.Y. Misc. Lexis 229(N.Y. Sup. Ct. May 26, 1995)]. Family-oriented computer network을 보유한 Prodigy사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을 관리한다고 광고하는 점에서 On-line 서비스 산업에서 유일한 위치에 있다고 판사가 진술하고, Prodigy사가 모니터 요원을 고용하고 소프트웨어를 심사하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게시판에 있는 60,000여개의 메시지

를 모두 모니터할 수 없다는 Prodigy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Prodigy사가 관리한 내용을 서비스한다고 스스로 내세운 사실이 이 판정에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이상의 판례와 같이 Digital data는 인쇄물과 실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원한없이 저작물을 computer전송하는 행위가 소유자들의 권리를 어느 정도로 침해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다. 일단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면 침해에 관한 책임을 판단해야 하는 데, 누가 침해 자료를 down-load했는지에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함으로 저작권 소유자는 on-line service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고, 전송자와 on-line service 제공자는 단지 정보 전송을 위한 도관만 제공할 뿐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구독자에 의해 자행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간접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연유로 미국에서조차도 on-line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on-line service 제공자가 저야 할 책임에 관한 판례는 여전히 모호한 채로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상무성의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에 의해 종합 보고서[IITF Report, supra]가 작성되었으나, network환경에서의 저자와 대중 권리간의 논쟁은 완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 있다.

현존 법이 computer network, 특히 INTERNET세계에 부적당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과연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 지가 불확실한 상태가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Digital환경을 보다 훌륭하게 가꾸어야 한다는 것과 비록 불과 몇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network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수많은 문제와 기회를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